(무) 흥국 퇴직적립보험

# 사업방법서

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

## (사업방법서 별지)

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흥국 퇴직적립보험

## 2. 사업경영의 지역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신탁사업자가 있는 전 지역으로 한다.

# 3.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

## 가. 보험계약자

이 보험에서 "보험계약자"는 법 제16조에 기초하여 특정 금전신탁계약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## 나. 피보험자

이 보험에서 "피보험자"는 자산관리신탁을 말한다.

## 다. 보험수익자

이 보험에서 "보험수익자"는 '가'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하다.

## 4. 제도의 유형

- 확정급여형
- 확정기여형
- 개인퇴직계좌 (개인형, 기업형)

# 5. 이율에 관한 사항

가.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한다.

구분		적용이율
확정급여형,확정기여형, 개인퇴직계좌 (개인형, 기업형)	이율보증기간 1년	1년형 적용이율
	이율보증기간 2년	2년형 적용이율
	이율보증기간 3년	3년형 적용이율

- 나.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.
  - 회사는 매월 1일 및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한다.
  - 다만,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,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.

각 단위보험별 규모	최저한도	최고한도
5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170%
5억원 이상~10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180%
10억원 이상~30억원 미만	기준이율의 80%	기준이율의 190%
30억원 이상~100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200%
100억원 이상		-

- (주) 한도 산출이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.
-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「국고채 수익률」, 「회사채 수익률」을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다.

#### [1년형 기준이율]

○ 지표금리(%) = 0.7 × A1 + 0.3 × A2

A1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: 회사채(1년만기,무보증,AA-) 수익률의 평균값

#### [2년형 기준이율]

o 지표금리(%) = 0.7 × A1 + 0.3 × A2

A1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: 회사채(2년만기,무보증,AA-) 수익률의 평균값

## [3년형 기준이율]

○ 지표금리(%) = 0.7 × A1 + 0.3 × A2

A1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: 회사채(3년만기,무보증,AA-) 수익률의 평균값

- 주) 1.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 균값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 적용함
  - 2.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 적용함
  - 3.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.
- 다.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(e-mail, 전자문서, Web 등)으로 통지한다.

- 라.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.2%로 한다.
- 마.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.

# 6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회사는 동 상품의 제공과 관련, 업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운용관리기관에 대해 상품제공수수료를 부과한다.

## 7.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

가.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

나. 납입기간 전기납

다. 수금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

#### 8. 해지화급금의 지급

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
단,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
#### 9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 없음

## 10.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

#### 가. 특별계정의 선정

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선정 운용하며,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 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- 퇴직적립보험(이율보증기간 : 1년, 2년, 3년)

## 나.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

- (1)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- (2) 상품관리수수료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단, 상품관리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상품관리수수료를 적용한다.
- 다.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(1)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.
- (2)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.
- (3)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,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 법령이 재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.
- 라.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
- (1)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다.
- (2)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자산관리신탁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.
  - ①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
  - ②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
  -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
- (3)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

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

#### 11. 적립금의 계산

이 보혐의 적립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#### 12. 운용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5.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적용이율 보증기간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

- 다.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'나'항을 준용한다.
- 라. 제'다'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,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로 한다.
- 마. 이율보증기간중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(MVA) 적용

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에 (1-시장가격조정률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.

시장가격조정률(MVA; Market Value Adjustment)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.  $MVA = 1 - [(1 + i_j) / (1 + i_h)]^{n+m/12}$ 

- (1) MVA의 최대한도는 5%로, 최소한도는 0%로 함
- (2)  $i_j > i_h$  인 경우 또는 퇴직, 전출입, 제도변경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MVA=0으로 함. 주)
  - ① 잔여보증기간 : 단위보험 해지일(변경일)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
    - n :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
    - m :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(월미만 절상)
  - ② i; :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  - ③ in: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(변경)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
    - 잔여보증기간 1년이상인 경우 :  $i_h$  =  $i_{h-1}$  +  $(i_{h+1}$   $i_{h-1})$  imes m' / (12 imes n')
    - 전여보증기간 1년미만인 경우 : i<sub>h</sub> = i<sub>h+1</sub>
      (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)
    -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
      - · i<sub>h-1</sub> :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(변경)시점 적용이율 의 기준이율
      - · i<sub>h+1</sub> :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 에 해당하는 해지(변경)시점 적용이 율의 기준이율
    - n': i<sub>h-1</sub> 이율보증기간부터 i<sub>h+1</sub>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
    - m': i<sub>h-1</sub>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(월미만 절상)

#### 13. 기타 사항

- 가. 용어의 사용
  - 이 보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.
- 나. 이 보험의 내용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.